

안산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430
----------	------

발의년월일 : 2006. 1.
발 의 자 : 이문종 의원 외 13인

제안이유

- 출산율 저하는 장기적으로 노동력감소와 인구 노령화에 따른 부담가중 및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풍요로운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인구증가시책의 일환으로 여성의 출산율 제고를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출산 장려금과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출산분위기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은 출산일 기준으로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계속 거주한 셋째자녀이상 출산가정에 한함(안 제4조).
- 나. 출산장려금 지원액은 셋째자녀는 1인당 100만원이하, 넷째자녀이상은 1인당 150만원이하를 지원함(안 제5조).
- 다.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은 시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가정으로 셋째자녀부터 출생한 자를 대상으로 함(안 제9조).
- 라. 영유아 양육비 지원액은 1인당 월 5만원이하를 지원함(안 제10조).

제정조례안 : 별첨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없음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사항 : 1,282,036천원(년간)

- 출산장려금 ----- 806,020천원
 - 셋째아이 : 8,440명 × 9.1% × 1,000,000원 = 768,040천원
 - 넷째아이 이상 : 8,440명 × 0.3% × 1,500,000원 = 37,980천원
- 양육비 ----- 476,016천원
 - 셋째아이이상 : 8,440명 × 9.4% × 50,000원 × 12월 = 476,016천원

※ 양육비 소요예산(향후 5년간)

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계	119,004천원	595,020천원	1,190,040천원	2,380,080천원	4,760,160천원
양육비 소요예산	$8,440\text{명} \times 9.4\% \times 50,000\text{원} \times 3\text{월} = 119,004\text{천원}$	$8,440\text{명} \times 9.4\% \times 50,000\text{원} \times 12\text{월} + 119,004\text{천원} = 595,020\text{천원}$	$8,440\text{명} \times 9.4\% \times 50,000\text{원} \times 12\text{월} + 119,004\text{천원} = 1,190,040\text{천원}$	$8,440\text{명} \times 9.4\% \times 50,000\text{원} \times 12\text{월} + 119,004\text{천원} + 595,020\text{천원} = 2,380,080\text{천원}$	$8,440\text{명} \times 9.4\% \times 50,000\text{원} \times 12\text{월} + 119,004\text{천원} + 595,020\text{천원} + 1,190,040\text{천원} + 2,380,080\text{천원} = 4,760,160\text{천원}$

사전예고(결과) : 해당없음

기타 참고사항 : 별첨

- 안산시 연도별 출생현황 1부
- 출산순위별 현황 1부

안산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현상과 노동력감소, 인구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 부모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출산장려금과 양육비를 지급하여 출산율 제고로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의 구분) 이 조례에서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은 출산장려금과 영유아 양육비로 구분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출산장려금” (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임산부의 출산을 축하하고 산모·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2. “영유아 양육비” (이하 “양육비”이라 한다)이라 함은 셋째자녀부터 영유아를 양육하는데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3. “신청인”이라 함은 영유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의 보호자를 말한다.

제2장 출산장려금

제4조(지원대상자) 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모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셋째자녀이상 출산한 자로 한다.

제5조(지원기준)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셋째자녀는 1인당 100만원 이하, 넷째자녀 이상은 1인당 150만원 이하를 지원한다(입양자녀 포함). 다만, 출생아가 쌍태아 이상인 경우에는 태아별로 지원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구청장, 동장은 출생 신고서를 접수한 자가 장려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일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출산장려금지원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산장려금을 신청할 경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공부확인가능)
3. 대상자 예금통장 사본 1부

③ 지원대상자는 출산일로부터 3월 이내에 관할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방법)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당해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와 현지조사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영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해당 여부

② 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출산장려금지원대상 확인자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 후 장려금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송부받은 달의 20일까지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입금조치한 때에는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⑤ 시장은 제3항의 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직속기관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조(환수 등)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자가 장려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자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장려금을 환수할 때에는 장려금 지급 대상의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제3장 영유아 양육비

제9조(지원대상자) ① 지원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자녀와 함께 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세대 중 셋째자녀 이상 출산한 자로 한다. 단, 시 관내로 주민등록을 전입한 자는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달부터 지급한다.

②지원기간은 신청일의 그 다음달부터 6세 미만(취학전아동)까지로 하며, 시행일 기준 어린 연령층부터 연차적으로 실시한다.

제10조(지원액) 지원액은 1인당 월 5만원 이하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제11조(지원신청) ①출생신고를 받은 구청장, 동장은 지원대상자인 셋째자녀부터 출생자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유아 양육비 지원 신청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 양육비 지원 신청서 1부.

2. 대상자 예금통장 사본 1부.

③지원대상자는 관할 동장에게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방법) ①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당해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 전산망 자료등 행정 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주소지, 거주기간, 영유아의 생년 월일, 출생순위 등을 확인하여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양육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양육비 신청서를 송부받은 달의 20일까지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③동장은 대상자의 전출·사망 등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변동사항을 조사하여 그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변동사항은 그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제13조(환수 등)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양육비를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양육비를 환수할 때에는 양육비 지원 대장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제4장 보 칙

제1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모·부자복지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영유아 관련 지원금 수혜대상자도 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하되, 다른 법률에 의한 지원금액이 양육비를 초과할 때에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조례 시행 후 국가가 정책적으로 출산장려금, 양육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액을 미달하는 경우에는 차액만큼 추가 지원한다.

제15조(대장 등 비치)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동장은 출산장려금 신청 대장(별지 제3호서식), 영유아 양육비 신청 대장(별지 제4호서식), 시장은 출산장려금 지급 대장(별지 제5호서식), 구청장은 영유아 양육비 지원 대장(별지 제6호서식), 영유아 양육비 지원 대상자 변동사항(별지 제7호서식)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6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

보 호 자	부		주민등록번호	-
	모		주민등록번호	-
신 생 아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보호자와 관계			
	분만의료기관		분만일자	년 월 일
	출생순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상()		
주 소	안산시 번지			
전화번호	자 택		H. P.	
입금계좌번호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안산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출산장려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주소 :				
신생아와의 관계 :				
년 월 일				
안 산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셋째자녀이상 출산자에 한함), 통장사본1부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출산장려금지원대상 확인]

구 분	민 원 인	대 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확인사항	신청인 주소 :			
	관내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신생아 생년월일 : 년 월 일			
지원여부	결정()	미결정()		
민원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별지 제2호서식]

영유아 양육비 지원 신청서																																																			
보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보호자와의 관계	자녀중 째																																																	
입금 계좌번호	은행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 : ()																																																		
<p>「안산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영유아 양육비를 신청합니다.</p> <p>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 : 대상자와 관계 : 년 월 일</p> <p>안산시장 귀하 첨부서류 : 대상자 예금통장 사본 1부.</p> <p>[영유아 양육비 지원 대상 확인]</p> <p>*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p> <table border="1"> <tr> <td>신청인</td> <td>성명</td> <td></td> <td>주민등록번호</td> <td></td> <td>주소</td> <td></td> </tr> <tr> <td>보호자</td> <td>성명</td> <td></td> <td>주민등록번호</td> <td></td> <td>주소</td> <td></td> </tr> <tr> <td rowspan="2">대상자</td> <td>성명</td> <td></td> <td>주민등록번호</td> <td></td> <td>주소</td> <td></td> </tr> <tr> <td>보호자와의 관계</td> <td colspan="5">자녀중 째</td> </tr> <tr> <td rowspan="2">확인사항</td> <td>보호자의 주소</td> <td colspan="5"></td> </tr> <tr> <td>보호자의 안산시 거주기간</td> <td colspan="5">년 월</td> </tr> <tr> <td>민원인 원자</td> <td colspan="5">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td> </tr> </table>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보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보호자와의 관계	자녀중 째					확인사항	보호자의 주소						보호자의 안산시 거주기간	년 월					민원인 원자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보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보호자와의 관계	자녀중 째																																																	
확인사항	보호자의 주소																																																		
	보호자의 안산시 거주기간	년 월																																																	
민원인 원자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별지 제3호서식]

출산장려금 신청 대장

[별지 제4호서식]

영유아 양육비 신청 대장

[별지 제5호서식]

출산장려금 지급 대장

[별지 제6호서식]

영유아 양육비 지원 대장

[별지 제7호서식]

영유아 양육비 지원 대상자 변동사항

안산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1430
----------	------

제안년월일 : 2006. 2. 16.
제 안 자 : 경제·사회위원장

1. 수 정 이 유

- 과다한 예산이 수반되는 출산장려금의 지원액을 하향 조정하고 지원대상자의 지원기간을 명확히 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조문 내용을 수정하고자 함.

2. 주 요 골자

- 제5조 중 “셋째자녀는 1인당 100만원 이하, 넷째자녀 이상은 1인당 150만원 이하를 지원한다(입양자녀 포함)”는 내용을 “셋째자녀 이상부터 1인당 100만원 이하를 지원한다(입양자녀 포함)”로 수정함.(안 제5조)
- 제9조제2항 중 “6세미만(취학전아동)까지로 하며, 시행일 기준 어린 연령층부터 연차적으로 실시한다”를 “만 5세까지로 한다”로 수정함.(안 제9조)

안산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 중 “셋째자녀는 1인당 100만원 이하, 넷째자녀 이상은 1인당 150만원 이하를 지원한다(입양자녀 포함)”을 “셋째자녀 이상부터 1인당 100만원 이하를 지원한다(입양자녀 포함)”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6세미만(취학전아동)까지로 하며, 시행일 기준 어린 연령층부터 연차적으로 실시한다”를 “만 5세까지로 한다”로 한다.

조문대비표

원안	수정안
<p>제5조 (지원기준)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u>셋째자녀는 1인당 100만원 이하, 넷째 자녀 이상은 1인당 150만원 이하를 지원한다 (입양자녀 포함)</u>. 다만, 출생아가 쌍태아 이상인 경우에는 태아별로 지원한다.</p> <p>제9조 (지원대상자) ① (생략) ② 지원기간은 신청일의 그 다음달부터 <u>6세 미만(취학전아동)</u>까지로 하며, 시행일 기준 어린 연령층부터 연차적으로 실시한다.</p>	<p>제5조 (지원기준)..... <u>셋째자녀 이상부터 1인당 100만원 이하를 지원한다(입양자녀 포함)</u>.....</p> <p>제9조 (지원대상자) ① (원안과 같음) ②만 5세 까지로 한다.</p>